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2. 6 선고 2018나62742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화

담당변호사 김세환, 여윤빈, 김민이

피고, 피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선

변론 종결 2020. 1. 9.

판결 선고 2020. 2. 6.

제 1 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8. 14. 선고 2017가단252653 판결

주 문

1.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9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제1심에서는 연 15%의

자연손해금을 구하다가 당심에서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. 원고는 이 돈을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또는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원고가 2016. 7. 11. 5,000만 원(이하 '1 금원'이라 한다)을 E 주식회사(이하 'E'라 한다)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, 2016. 7. 14. 7,000만 원(이하 '2 금원'이라 한다), 2016. 7. 20. 7,100만 원(이하 '3 금원'이라 하고, 위 각 금원을 합한 1억 9,100만 원을 '이 사건 각 금원'이라 한다)을 피고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.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

1)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D(이하 'D'라 한다)가 보통의 다른 자전거보다 3배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의 생산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, D 및 관계회사인 F 주식회사(이하 'F'라 한다), E에 투자하면 연말에는 각 회사의 주식가치가 적어도 1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, 이를 믿은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투자하였다. 원고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약속한 투자 방향으로 금원을 사용하게 하고, 이 사건 각 금원이 고속자전거의 개발 등에 사용되는 것을 관리·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. 그러나 D가 파산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③ 금원 중 4,000만 원을 D의 주식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그 주권을 교부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각 금원이 제대로 투자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

원고에게 주식투자계약을 교부한 바가 없다.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 및 악의적인 의무 해태행위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금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.

2) 피고는 원고가 ① 금원을 투자함에 따른 신주교부 의무뿐만 아니라, 원고로부터 피고가 직접 송금 받은 투자금 명목의 2, ③ 금원 합계 1억 4,100만 원을 F, E에 투자하고, 위 회사들의 신주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.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로부터 ③ 금원의 투자금 중 4,000만 원을 D의 주식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그 주권을 교부한 것 외에는 나머지 1억 5,100만 원이 F, E에 투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(투자계약서 등)를 제출하지 못하였고, 위 각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해당 주권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. 특히 위 금원 중 원고로부터 ② 금원을 F, E에 투자하지 아니한 채, 원고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G, H 주식을 매입·매도함으로써, 임의로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 바,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,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.

3)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불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9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

1) ① 금원은 원고 명의로 E에 입금된 것으로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. 설령 위 금원이 피고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, 피고는 ① 금원 및 ③ 금원 중 3,100만 원을 E에 입금하였고, 원고에게 E 명의의 주권이 교부되었을 뿐이다.

2) 2, ③ 금원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 I 이 개인 자금을 투자한 것이다.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② 금원을 송금받은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G와 H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하였다.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③ 금원 중 4,000만 원을 D에 투자하였다(피고는 4,000만 원을 D의 부사장 J의 아들인 K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D는 원고의 대표이사 I 에게 1억 원 상당의 주권을 교부하였다가 I 으로부터 위 주권을 반환받고 I 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).

3)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투자로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원고가 지정한 용도와 다른 용도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투자계약을 불이행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행위를 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(오히려 을 제6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(I)는 피고 등을 상대로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(피고가 I 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 등을 교부받아이를 편취하였다는 점 등 포함)의 점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,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18. 2. 7. '피고 등이 공모하거나 I 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근거가 없다. 법인(원고)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여 법인(원고)자금을 이용하여 투자한 I은 일부 투자에 실패하였을 뿐, 피고 등이 I 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'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(증거불충분) 결정을 하였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임성철, 판사 김세현, 판사 지혜선